

#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검 토 보 고

### 1. 제 안 경 위

- 가. 발 의 자: 광향기 의원
- 나. 의안번호: 제444호
- 다. 발의일자: 2023. 1. 31.
- 라. 회부일자: 2023. 2. 9.

### 2. 제 안 사 유

-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의 중요성이 확대됨.
- 탄소중립·녹색성장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위원회의 기능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관련 조례·행정계획 등에 대한 검토기능을 추가하고자 함.
- 또한 공동위원장제를 도입하여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위원회 구성을 확대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.

### 3. 주 요 내 용

- 가. 위원회 기능 추가(안 제10조 신설).
- 나. 위원장 체제 및 위원 수 변경(안 제11조제2항 및 제3항).

## 4. 참고 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기후위기 대응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
- 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
- 다. 기타: 신·구조문대비표 참조

## 5. 검토 의견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‘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’(이하 “위원회”)의 기능을 추가하고, 공동위원장 제도 도입 및 위원회 규모를 확대하여 운영의 안전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.
- 안 제9조의2는 온실가스 감축 또는 기후위기 적응 관련 조례를 제·개정 또는 폐지하거나, 기본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·변경하는 경우에 그 내용을 위원회에 통보하는 규정을 신설하여, 위원회의 검토기능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임.

이는 상위법인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(이하 “탄소중립기본법”) 제14조와 「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」 제9조에 따른 것으로, 위원회의 기능 강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 할 수 있음.

다만,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조례에 중복으로 규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한 입안 방법이 아니라는 비판을 받을 우려가 있음.

<「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>

탄소중립기본법 제14조	개정안 제9조의2
<p><b>제14조(법령 제정·개정 등에 따른 통보 등)</b>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비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·개정 또는 폐지하려고 하거나 시도 계획 또는 시·군·구 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·변경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와 지방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.</p> <p>③~⑥ (생략)</p>	<p><b>제9조의2(조례 제정·개정·폐지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·변경 등에 따른 통보 등)</b></p> <p>① 시장은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또는 기후위기 적응에 관련된 조례를 제·개정 또는 폐지하려고 하거나, 기본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·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(이하 “국가위원회”라 한다)와 제10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.</p> <p>②~④ (생략)</p>

- 안 제10조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것으로,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은 기존의 행정1부시장 단독위원장 체제에서 공동위원장 체제로 확대하여 좀 더 원활한 위원회 운영체제를 확보하고, 위원 수를 기존의 20명 ‘내외’라는 불명확한 표현에서 40명 ‘이내’라는 정확한 표현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 이를 통해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.